제535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

회 의 록

2015. 11. 13.(금)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1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2015년 11월 13일(금) 16:00~18:00

○ 장　　소 :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

○ 출석위원(7명)

- 민간위원 : 전의찬, 김용하, 김동원, 전병준 위원

- 정부위원 : 행자부(정책기획관), 법제처(사회문화법제국장), 산업부(감사관)

2. 상정안건

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비고
2015-438	환경부	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	의결안건
2015-463	국민안전처	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	의결안건

3. 심의 · 의결사항

가.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(제2015-438호)

1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(시행규칙 제4조)

□ 환경오염시설의 **도급신고 대상・절차・제출서류** 규정

○ **(대 상)**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, 유해화학물질영업자

○ **(절 차)** 도급한 날로부터 **10일 이내**에 도급신고서를 인・허가 기관에 제출

○ **(제출서류)** 주요 생산품・매출액 / 도급계획서 /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 등

[제535회차('15.11.13 행정사회분과위원회)**]**

□ 주요발언

※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실시

○ (OOO위원) 환경피해 발생시 배상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급신고 등을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됨

○ (OOO위원) 또한, 동 개정안은 제출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있어 준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,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

⇒ (환경부) 공감함. 규개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익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기한을 완화하겠음

□ 심의결과 : 개선권고

○ 도급신고의 **대상・절차 등**에 있어 **타법령과 중복**되는 부분은 **제외 또는 같음**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, **제출기간도 연장**(10일→익월 15일)토록 **개선권고**함

나.「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- 안전처」(제2015-463호)

1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

□ 심의내용

○「소방시설설치유지법」개정('16.1.25 시행)에 따라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 내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규정

□ 주요발언

○ (OOO위원) 반영되지 않은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한 안전처의 의견은?

⇒ (안전처) 360°변위 수용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, 전후좌우의 변위만을 수용하였고, 배관 버팀대 간격의 경우 12m가 아닌 6m 적용시 지나치게 좁은 범위에 설치되게 된다고 판단

○ (OOO위원) 동 기준은 신축건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, 과거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?

⇒ (안전처) 소급 적용은 현행 법률체계상 곤란하고, 기존 건축물은 동 기준 적용시 거의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인 바, 증·개축 및 대수선 등의 경우 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

○ (OOO위원) 제 2조의 적용예외규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?

⇒ (안전처)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이 개발되어, 이를 새로이 적용하고자 할 때, 관련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

○ (OOO위원) 건축허가 시점과 비교할 때,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점은 대략 어느정도 시차를 가지는가?

⇒ (안전처) 건축물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나,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는 것이 보편적임

○ (OOO위원) 동 규제의 시행에 따라 건축주 등은 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 등을 해야할 것인 바, 규제실의 의견대로 내진설계 적용확인 시점을 늦추어 줌이 바람직함

⇒ (안전처) 타당하다고 인정되며, 수용하겠음

□ 심의결과 : 개선권고 1건

○ 건축설계 변경시간 확보 등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해, 고시 시행 후 1년까지는 내진설계 확인시점을 건축허가 시점에서 소방시설 착공 신고시점으로 늦추도록 개선권고